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목 차>

1. 탐사권 및 채취권 설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작 성 자	이름	이재형
	담당부서 (과)	자원안보정책과		직급	사무관
	국장	윤창현		연락처	044-203-5241
	과장	김재은		이메일	ljh9151@mail.go.kr

2024. 09. 30. 작성

정책책임자 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탐사권 및 채취권 설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		
	2.규제조문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제7조의2, 별표 3		
	3.위임법령	해저광물자원개발법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4.10.04~2024.11.13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해저조광권이란 설정행위에 의하여 국가 소유인 해저광구에서 해저광물을 탐사·채취 및 취득하는 권리를 말하며, 정부는 해저조광권자와 조광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양한 조건과 부담을 붙임 ○ 동 개정안은 투자기업의 투자 위험을 완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조광권 허가시 붙이는 부담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투자기업에게 예측가능한 투자환경 제공 － 동법 제19조의2(원상회복)는 해저조광권자의 원상회복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조광권 종료 후 일시에 대규모 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해저조광권자에게 부담이 크므로, 원상회복 비용 사전적립 제도를 도입하여 해저조광권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함 ＊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19조의2(원상회복) ① 해저조광권자는 해저조광권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해저조광구에 설치한 인공구조물, 시설물, 그 밖의 장비(이하 “인공구조물등”이라 한다)를 수거하여 해저조광구를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 업계 관행상 붙이는 부담인 특별수당을 정부와 협의를 통해 조광계약에 반영함을 명시하고자 함 ＊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16조(조건부 허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탐사권 설정이나 채취권 설정에 대한 허가에는 조건과 부담을 붙일 수 있다.		
	7.규제내용	○ 동법 제16조(조건부 허가)에 따라 탐사권이나 채취권 설정시 다음의 부담을 붙일 수 있음을 명시하고, 요건 및 기준을 별표로 규정 ＊1.원상회복충당금, 2.특별수당, 3.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별표3 - 원상회복충당금 산정방식 규정, 특별수당의 종류와 정부와 조광권자의 협의를 통해 조광계약에 반영됨을 규정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국내 석유가스전 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석유공사 등 석유가스 자원개발기업)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이해관계자	국내 석유가스전 개발에 참여하려는 기업	석유공사 외 참여사 미정(업계 소수)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투자매력도를 증진시키고, 부담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투자기업에게 예측가능한 투자환경 제공 - 원상회복비용의 사전 적립을 통해 원상회복 시점이 다가오는 사업 후반부 기업의 진출입을 용이하게 하고자함 - 특별수당(보너스)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투자기업에게 예측가능한 투자환경 제공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없음	측정불가		
		주요내용	○(원상회복충당금) 조광권 만료 후 일시에 발생하는 원상회복비용을 특정시점부터 사전에 적립하여 투자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사전적립 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하여 기업에게 편익 발생 - 원상회복비용은 사전 적립제도의 도입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동 규정 신설에 따른 추가 비용 없음 - 원상회복비용은 개발계획(매장량 포함), 시설물의 재활용 여부, 기술력 등에 따라 비용이 상이하므로 현 시점에서 산정하기 어려움 ○(특별수당) 글로벌 업계 관행상 동 규정 도입 여부와 무관하게 투자기업은 조광계약 등을 통해 정부에 특별수당을 지급하므로, 추가 비용 없음 - 특별수당 규모, 방식 등은 정부와 기업간 협의에 의해 정해지는 사항으로, 현시점에서 산정하기 어려움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에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해당		

			성격의 규제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우선허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 당없음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0	0	0	
15.규제정비 계획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전체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7조의2(조건부 허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탐사권이나 채취권 설정에 대한 허가에 다음 각 호의 부담을 붙일 수 있다. 1. 원상회복충당금 2. 특별수당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부담의 요건 및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해저조광권이란 설정행위에 의하여 국가 소유인 해저광구에서 해저 광물을 탐사·채취 및 취득하는 권리를 말하며, 정부는 해저조광권자와 조광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양한 조건과 부담을 붙임
- 동 개정안은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부담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투자기업에게 예측가능한 투자환경을 제공하고자함
- 동법 제19조의2(원상회복)는 해저조광권자의 원상회복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조광권 종료 후 일시에 대규모 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해저조광권자에게 부담이 크므로, 원상회복 비용 사전적립 제도를 도입하여 해저조광권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 *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19조의2(원상회복) ① 해저조광권자는 해저조광권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해저조광구에 설치한 인공구조물, 시설물, 그 밖의 장비(이하 “인공구조물등”이라 한다)를 수거하여 해저조광구를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 특별수당(보너스)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투자기업에게 예측가능한 투자환경을 제공
 - *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16조(조건부 허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탐사권 설정이나 채취권 설정에 대한 허가에는 조건과 부담을 붙일 수 있다.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현행 유지안
	내용	조광권 효력 소멸시 원상회복 의무 발생
규제대안2	대안명	생산누적생산량이 초기 신고 매장량의 50%를 초과

		하는 시점부터 원상회복충당금 적립(개정안)
	내용	생산누적생산량이 초기 신고 매장량의 50%를 초과하는 시점부터 원상회복충당금 적립(개정안)
규제대안3	대안명	생산개시 시점부터 원상회복충당금 적립
	내용	생산개시 시점부터 원상회복충당금 적립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조광권 효력기간 중 원상회복 비용 미지출	○생산 종료로 현금유입이 종료된 시점에서 대규모 원상회복비용 지출 ○사업후반부 투자기업의 사업 진출입 어려움
규제대안2	○조광권 만료 후 조광권자 부담 완화 ○사전 적립비용의 세액공제 ○대안3대비 대규모 투자비가 소요되는 사업 초반 투자기업의 부담 완화 ○사업 후반부 투자 유치 및 사업 진출입 용이	없음
규제대안3	○적립시점이 빠를수록 원상회복 의무 수행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행정당국으로서는 유리한 측면 ○개정안 대비 장기간에 걸쳐 적립하므로 연도별 적립액은 비교적 적음 ○사전 적립비용의 세액공제	○많은 투자비가 소요되는 사업 초기 투자기업의 부담 증대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석유공사	'24.6 ~'24.9.25 계속(상시)	국영석유기업으로서 제도설계 전반 참여	현 개정안 도출
석유공사,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	'24.6~'24.9(대면회의 등)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도이며 도입 찬성 ○매장량 용어 명확화 필요 ○ 보너스 한글 명칭 고민 필요	현 개정안 반영 (보너스→특별수당 등)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대안2(개정안)는 현행 제도 대비 조광권 만료 후 대규모 원상회복비용 지출이 필요한 해저조광권자의 원상회복의무 이행 부담을 완화시켜 주며, 기업으로서는 사업 진출입 등 의사결정의 유연성 제고 가능

○또한, 대안3 대비 사업 초반부 비용 부담을 완화시켜 투자매력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으므로 대안2가 바람직

3. 규제목표

투자기업에게 예측가능한 투자환경을 제공하고 원상회복 의무 부담 완화를 통해 투자매력도 제고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개정안은 기업의 투자 위험을 완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조광권 허가시 붙이는 부담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투자기업에게 예측가능한 투자환경 제공하고자 함

- 동법 제19조의2(원상회복)는 해저조광권자의 원상회복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조광권 종료 후 일시에 대규모 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해저조광권자에게 부담이 크므로, 원상회복 비용 사전적립 제도를 도입하여 해저조광권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19조의2(원상회복) ① 해저조광권자는 해저조광권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해저조광구에 설치한 인공구조물, 시설물, 그 밖의 장비(이하 "인공구조물등"이라 한다)를 수거하여 해저조광구를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 업계 관행상 부가하는 부담인 특별수당을 정부와 협의를 통해 조광계약에 반영함을 명시

○ 해저조광권자의 원상회복의무 이행을 담보하는 동시에 해저조광권자의 부담을 완화하므로 목적과 수단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없음

- 중기영향평가

유가스전 개발은 중소기업 참여가능성이 희박하므로 개정안의 중소기업 영향 가능성은 낮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규제 차등화 해당없음
② 규제 방식	
③ 예비분석모델	
판단 근거	
④ 대상 업종	
⑤ 예비분석내용	
⑥ 차등화적용 여부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고용과 관련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참여자간 경쟁과 관련 없음

- 일몰설정 여부

자원개발은 15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투자제도의 법적 안정성이 중요하므로 일몰설정 부적절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	구체적인 사항은 정부와 조광권자가 협의하여 조광계약에 명시하도록 함
유연한 분류 체계	○	구체적인 사항은 정부와 조광권자가 협의하여 조광계약에 명시하도록 함
네거티브 리스트		해저조광권자에게 예측가능한 투자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일부 부담에 대하여 세부 내용을 규정한 것임
사후 평가관리		사전 심의, 검사제도와 무관함
규제 샌드박스		신산업시도와 무관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해외 주요 산유국들은 조광계약 또는 법령을 통해 특별수당, 원상회복충당금을 규정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국제적으로 명시적인 기준은 없으나 특별수당, 원상회복 충당금은 글로벌 업계 관행과 부합함	일치	

○ 타법사례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17조 원자력발전소해체 충당금 적립에 대하여 규정

* 법 제17조(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의 적립 등) ① 원자력발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는 데에 쓰일 충당금을 매년 별도로 적립하고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현행 유지안>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4	2025	3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현행 유지안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 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제도 설계시 동해 가스전 개발 주체인 석유공사와 수차례 협의하였으며, 글로벌 관행과도 일치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행정업무가 가중되지 않으므로 집행가능성 문제 없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해당 없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석유공사, 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 전문가들과 수차 협의하였으며, 수립된 의견을 개정안에 반영하였음

* 동해 가스전 개발 전략회의(6.21, 9.25) 등

2. 향후 평가계획

해저조광권자와 지속 협의하여 제도 보완 필요성 검토 계획

3. 규제 정비계획

향후 가스전 개발 확대시 조광제도 전반 재검토 계획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전체	조광제도 전반 재검토	2030년 이후

4. 종합결론

개정안은 조광권자의 기존 의무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해저조광권자에게 예측 가능한 투자환경을 제공함이 목적이므로 동 규정 신설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	단위
2024	2025	3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현행 유지안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현행 유지안>